

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1999년 10월 5일. 평창군수(건설과장)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70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
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('99년 10월15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과장 박현창)

가. 제안이유

- 농어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'94.12.22일 농어촌정비법과 '95.6.23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제명중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개정.
- “용수”를 “기반”으로 개정(안 제2조 및 제2조)
- “토지개량계”를 “농지개량계”로 개정(안 제3조 및 제5조)
- “토지개량조합”을 “농지개량조합”으로 개정(안제3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■ 종합검토결과

- 본 조례의 설치목적은 국가,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공사가 평창군 관내에 설치한 모든 농업용수 시설물에 대하여 주민의 애호심과 자조정신 양양하여 이의 선량한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어촌근대화 촉진법에 따라 1971. 2. 1 조례 제250호로 공포되었으나,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 정비된 농어촌정비법이 '94.12.22일 제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게 「제명」과 “용어”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농업용수시설물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. 끝 .